

「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민성 의원 외 23명

2. 제안이유

- 관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온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, 가업승계인의 책무(안 제1조~제4조)
- 가업승계업체 지정 및 가업승계 지원, 지정취소(안 제5조~제7조)
-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, 운영 등(안 제8조~제14조)
-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,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,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- 부서검토 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에서 2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코로나 19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장수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.